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127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2월 27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”를 “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”로 규정하고 있으나,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범위에서 “학생안전과 재산관리”를 제외시키고 있는바, 안정적인 학교시설운영 측면에서 이를 수정함(안 제3조제1항).
- 현행 조례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되 교육여건을 고려하도록 한 원칙을 규정한 조항으로, 이의 개정 또는 삭제 시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함.
- 인용된 조항을 의미에 부합하도록 수정함(안 제12조의2제2항).

2. 주요내용

- “교육활동이 없는 시간·주말·공휴일 등 학교교육”을 “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”로 수정함(안 제3조제1항).

- 개정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과 같이함(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).
- 삭제 조항을 현행과 같이함(안 제3조제4항).
- “제11조제1항” 을 “제10조제1항” 으로 수정함(안 제12조의2제2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제1항 본문 중 “교육활동이 없는 시간·주말·공휴일 등 학교교육”을 “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 및 학생 안전과 재산관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③ 학교시설의 사용목적은 교육·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안 제12조의2제2항 중 “제11조제1항”을 “제1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개방의 원칙)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</p> <p>③ 학교시설의 사용목적은 교육·체육 그 밖의</p>	<p>제3조(개방의 원칙) ① 학교장은 <u>교육활동이 없는 시간·주말·공휴일 등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</u>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. 다만, 학교행사·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학교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,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이 편</u></p>	<p>제3조(개방의 원칙) ① 학교장은 <u>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</u>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. 다만, 학교행사·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 제2항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

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- ④ 학교장은 해당 학교의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자유로운 개별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리하게 이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시설의 이용 예약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.

<삭 제>

제12조의2(이용수칙 및 홍보)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·이용방법·신청절차·선정기준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,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

④ (현행 제4항와 같음)

제12조의2(이용수칙 및 홍보) ① (개정안과 같음)

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(개정안과 같음)

(專用)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·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·교직원, 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
2.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
3.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

<신 설>

제14조의2(지도 및 감독)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하며,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4조의2(지도 및 감독)
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교육활동”을 “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”으로, “학교시설을”을 “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학교행사·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2조의2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이용수칙 및 홍보)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·이용방법·신청절차·선정기준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,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(專用)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·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

를 학생·교직원, 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
2.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
3.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

제14조의2(지도 및 감독)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하며,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개방의 원칙) ① 학교장은 <u>교육활동</u>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<u>학교시설을</u> 개방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3조(개방의 원칙) ① ----- <u>교육활동의 종료 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과 같이 교육활동</u> ----- ----- <u>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</u> ----. 다만, 학교행사·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<u>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</u>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의2(이용수칙 및 홍보) ① <u>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·이용방법·신청절차·선정기준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,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(專用)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·운영하되 다음 각</u></p>

<신 설>

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·교직원, 지역주민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

2.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

3.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

제14조의2(지도 및 감독)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·감독하며,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